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 종합자료집

- 일 시 : 2012. 6. 27. (수) 14:00~17: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 주 제 :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 종합자료집

- 일 시 : 2012. 6. 27. (수) 14:00~17: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 주 제 :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진행

- ▶ **개회선언, 국민의례** 14:00 ~ 14:05
- ▶ **기조연설** 14:05 ~ 14:10
-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
- ▶ **<제1세션> 정부정책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14:10 ~ 15:10
- ▶ **Coffee Break** 15:10 ~ 15:30
- ▶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15:30 ~ 16:30
- ▶ **총평** 16:30 ~ 17:0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 CONTENTS -

▶ 기초연설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	1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	13

<제1세션> 정부정책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15

• 쟁 점 1 : 개별적 연관성 유무	18
• 쟁 점 2 : 정정보도청구의 중첩 문제	26
• 쟁 점 3 : 보도의 허위성 여부	32
• 쟁 점 4 : 조정과 위축효과	43
• 보 론 : 불법소스 사용의 문제점	52
• 기타의견	56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59

• 사례 및 쟁점소개	62
• 쟁 점 1 : 오보와 상당성	65
• 쟁 점 2 : 가상보도와 공공의 이익	74
• 쟁 점 3 : 분석/해설 기사에서의 방법론적 오류	81
•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90
• 기타의견	93

▶ 총 평

1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	105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107

기 조 연 설

기조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정학철입니다.

오늘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도할 미래의 법조인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 생각하니 오늘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1년에 세 차례씩 지역의 여러 도시를 돌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저희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토론회 또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리하여 ‘미래의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로서는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신인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생입니다. 법대 졸업 후 저는 나름의 뜻을 품고 언론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십 년 간 기자로서 활동했고 동아일보 편집위원을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자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늘면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보다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현직에서는 기자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저는 언론보도의 문제를 바라보는 법조인과 언론인들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언론인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두 직업 간에 많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할 때 법조인들은 언론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언론인들은 법조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법학 교수님들 밑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연마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토론회 또한 향후 여러분들이 법조인 내지는 이 사회

의 리더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언론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오보 대응 기피’ 현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약 60%가 개인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은 1.4%, 국가기관은 3.7%, 기업체는 13.6%에 불과합니다. 기사화될 확률이 높은 이들 기관의 조정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언론과의 마찰을 기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기피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디만, 한 번쯤 논의해 볼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에 관한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있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관계자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또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한 실무자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7.

정 학 철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상조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근대법학교육의 태동을 기념하는 이곳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지난 세월, 저희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많은 우수한 법률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법원의 재판 외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은 일도양단식의 재판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상사, 저작권, 환경,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법률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도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교육에 좀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핵심 주제 중 하나도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일종인 ‘언론조정중재제도’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지난 198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31년의 역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자적인 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조정사건이 2,124건, 중재사건은 113건에 달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상당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언론분쟁에 관한 한,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당사자들이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다루는 분야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언론이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되면 언론으로서는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언론분쟁 분야에서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무췌록, 우리 대학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오늘 토론회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체험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언론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보다 성숙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며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7.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세션〉
정부정책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 **진행**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패널** : 김규완, 김지아, 라기원, 위보영, 이나현,
이재하, 임효준, 현재언, 황지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개요

제1세션 토론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처리한 2011서울조정1128 사건을 사례로 진행되었다. 본 사례는 외교통상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한 사건으로, 조정대상물은 2011년 9월 15일자 1면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8면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31면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각 기사이다.

한겨레신문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하여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공식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약속’ 했으며 이는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다는 설명과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보도내용 중 특히 ‘약속’ 이란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종훈 당시 본부장의 면담대상인 포메로이 의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며, 전문 원문에도 ‘약속’ 을 했다는 표현은 없고 FTA와 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FTA의 대가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허위보도’ 로 판단하고 한겨레신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한겨레신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가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중재부와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된 상태이다.

본 토론회의 제1세션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개별적 연관성 유무, 보도의 허위성, 국가기관의 오보대응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쟁 점 1 : 개별적 연관성 유무

- 발언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 신청인측 입장

김 지 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훈 본부장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교통상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과 외교통상부 정책수행은 불가분성이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이 조정대상기사를 접했을 때 김종훈 본부장 개인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또한 발언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어도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겨레 측의 보도내용을 글자 그대로 본다면 김종훈 본부장이 발언의 주체로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과 외교통상부간의 관계는 단순히 일반 사인(私人)과 그가 소속한 사회생활상 단체와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명백히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측과 협의함에 있어 명백히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의 자격으로, 그 직무수행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행위한 것이고, 협상의 모든 과정 및 결과는 외교통상부 더 나아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겨레 측의 보도내용은 김종훈 본부장의 신의 없는 협상태도에 비난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다는 정부의(즉, 외교통상부의) 성명과 배치되는 ‘외교통상부의’ 별도의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이 조정대상기사를 접했을 때 형성되는 인식이 김종훈 본부장 개인이 아닌 쌀 개방 추가협상을 둘러싼 외교통상부의 정책수

행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아도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설령 ‘피해를 입은 자’의 개념을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자’로 매우 엄격히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부는 해당 사안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란 쟁점에서 언급될 언론조정의 당사자적격의 확대의 필요성을 차치하더라도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측에서는 적어도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과 그에 대한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서는 외교통상부 측이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른바 ‘PD수첩’ 대법원 판결¹⁾을 제시하며, 해당 판결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피해부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PD수첩’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지는 단순히 발언의 주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구조를 고려하여 보도내용의 비판 대상을 가린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피신청인 측의 논리는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내용과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부분을 양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김종훈 본부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측의 신청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 부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의 신청의 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개인자격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발언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이는 더욱더 명백해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판례도 발언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님에도 국가기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한 예가 다수 있다. 예컨대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²⁾에서 국가기관의 언론소송 당사자적격을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개별적 연관성이란 측면에서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업무

1)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이 사안에 대입해본다면 외교통상부의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될지의 여부는 이 보도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는 앞서 검토하였듯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개인의 배후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 및 반론보도의 취지와 직접적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 구제에도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 피신청인측 입장

이 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서 지명된 직접적인 피해자는 김종훈 본부장이 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개별적 연관성도 없어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에도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단체가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허위사실의 보도)이 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³⁾

이 사건은 외교통상부가 한겨레신문사측을 상대로 한겨레 측의 보도가 허위이며, 그로 인해

3)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言論仲裁>>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 p.82.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사안이다. 즉 이 사건은 크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내용과 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이고, 한·미 FTA와 쌀 문제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피해부분이 또 다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후자 부분은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자 부분, 즉 김종훈 전 본부장의 발언내용과 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개별적 연관성’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 요건이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피해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⁴⁾고 하여 이 피해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정보도 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능력을 훨씬 넓게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인 바가 있는데⁵⁾,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개별적 연관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를 폭넓게 완화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사건에서 외통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MBC PD수첩 사건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아마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보아 본 사건에서도 스스로가 정정보도청구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판례를 얼핏 보면 이러한 외통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판례가 농림수산물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5)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카9145 판결 참고

품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보도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위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⁶⁾

즉, 이 사건과 비교해본다면 이 판례는 외교통상부의 정책수행과 관련한 부분(앞서 언급한 후자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지, 김종훈 본부장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는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우리 언론중재법에서는 제14조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단체를 위해서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청구할 수 있음은 예정하고 있으나, 대표자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단체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어디에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어떤 단체의 대표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단체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법은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의 대표자인 소외 김OO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체인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단체는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⁷⁾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서 지명된 직접적인 피해자는 김종훈 본부장이다. 따라서 역시 외교통상부는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개별적 연관성도 없어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서울민사지법의 판단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 청구를 위한 당사자능력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한 견해가 있었다.⁸⁾

6) 위의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7)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카35089 판결

8) 김상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에 대한 평석>, <언론과 법> 제5권 제1호, 2006년 9월, pp.439-490.

생각건대,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본안 전 요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 즉 피해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전 요건처럼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본안 전 요건을 넓게 인정한 것을 생각한다면 본안 판단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보도의 진실성이 피해자 요건 즉, 개별적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⁹⁾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서 외교통상부의 개별적 연관성 유무 역시 한겨레 보도의 허위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판례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는 진실성이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심지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례도 이야기하듯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판례의 일관된 법리를 전제한다면¹⁰⁾ 이 사건 보도는 그 허위성을 인정 내지는 적어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9) 물론 피해 유무 판단에 있어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6. 1. 28. 85다카1973판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판결은 피해자의 범위를 가급적 널리 인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의 판단에 보도의 진실성이 고려요소가 된다는 판결들(춘천지법 1989. 11. 3. 88카1616 판결, 수원지법 1991. 12. 20. 90카18577 판결, 전주지법 1992. 10. 29. 9250 결정 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실무상 보도의 진실성이 개별적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장영수, <최근의 언론관계판례 개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언론중재>> 48호, 1993년 10월, p.40.

1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제15조 제4항에서는 언론사의 항변사유로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면서 제1호에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그가 소속된 외교통상부가 정정보도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특히 발언의 당사자 김종훈 본부장이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는 별도로 한겨레신문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직접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본인이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정정보도청구까지 신청한다면, 소속기관에까지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해 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실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오히려 두 당사자의 정정보도청구의 신청 주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중복제소 문제를 야기하게 될 여지가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 내용과 그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외교통상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으로 인해서 후에 별도로 제기한 김종훈 본부장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모순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때문에 적어도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외교통상부에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PD 수첩 사건을 이유로 일반 시청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¹¹⁾

1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참고

신문사의 보도의 자유 역시 주관적인 자유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서의 개별적 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리상 단체 소속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단체가 직접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부당한 확장해석이 될 것이며, 향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가 남발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도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 김종훈 전 본부장의 발언내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정정보도청구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 점 2 : 정정보도청구의 중첩 문제

- 외교통상부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의한 김종훈 본부장의 정정보도청구권 제한 가능성 -

▶ 신청인측 입장

위 보 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에는 중복제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59조)이 준용되지 않기에, 미리부터 한쪽의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보다 일단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한 후, 사실관계를 따져 정정보도를 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의 이중부담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 만약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 쪽의 청구권 행사 이후 다른 쪽의 청구권 행사가 부정된다면, 누가 먼저 청구권을 행사했느냐의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권리 행사의 기회를 애초에 박탈당하는 불합리를 수인하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외교통상부와 김종훈 본부장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양쪽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 한 쪽의 행사로 다른 쪽의 행사가 배척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외교통상부의 정정보도청구가 있는 후 김종훈 본부장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나, 민사소송법 제259조 상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쪽의 정정보도청구의 인용만으로 다른 쪽의 피해가 구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부당하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외교통상부가 공무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점, 정정 보도를 통해 이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고, 외교통상부의 요구대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완전히 그 피해를

구제 받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만약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 쪽의 청구권 행사 이후 다른 쪽의 청구권 행사가 부정된다면, 누가 먼저 청구권을 행사했느냐의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권리 행사의 기회를 애초에 박탈당하는 불합리를 수인하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피신청인 측은 후에 제기된 정정보도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심리될 경우 소송 경제에 반하고, 두 조정 신청이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겨레신문이 정정보도를 두 번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본 사안이 정정보도청구인 만큼 언론 보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과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며, 언론사에게 이중의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권 행사를 선택적으로만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뀐 주장이다. 한 번의 정정보도만으로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물론 한 번만 정정보도를 명하면 될 것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결정할 일이지 미리부터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일단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한 후, 사실관계를 따져 정정보도를 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의 이중부담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 절차가 반복되어 소송경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절차를 통합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사안이 조정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은 조정의 신청요건을 분쟁 중인 피해자나 언론사가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 또는 구술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도록 단순화하고 있다. 절차의 엄준화 보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조정절차에는 민사조정법 규정이 준용되는데, 동법 제 38조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가 준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조정에서는 중복 신청이 금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조정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당사자를 절차에 참여시켜 종국적이고 일률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큰 파급력을 가져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한계 없이 커질 수 있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 법이 언론중재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피해의 복합적인 구제 필요성, 특별법의 존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의 청구권 행사를 보다 확장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소송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언론보도의 피해자들에게 조정과 중재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법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본법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특수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사소송이 국가권력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조정과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다툼 없이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당사자를 절차에 참여시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도록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본부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선택적인 것으로 한 쪽의 행사로 다른 쪽의 행사가 배척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조정이라는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해결로 나아감이 바람직 할 것이다.

▶ 피신청인측 입장

임 효 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정보도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확정하고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정보도와 김종훈 본부장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중복제소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또는 기판력에 의거, 후속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겨레신문은 정정보도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고, 조정의 내용 간 모순이 생길 수도 있으며,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외교통상부의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어야 함이 옳지만, 외교통상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신청은 적법할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송’의 단계가 아닌 ‘조정’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조정의 경우라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는 두 가지 논거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조정신청과 소제기의 취급을 달리한다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자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구법 규정에 대해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¹²⁾

이에 따라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에서는 다른 청구와 달리 정정보도청구의 소만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8조에서 민사소송법 규정 중 일부만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에도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빠져 있고, 또 해당 규정에서 준용하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조항은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배척되므로 해당 규정이 언론조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제23조에 의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가지게 되므로, 소송에서의 경우와 같게 취급된다.

위의 논의를 전제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먼저 외교통상부의 조정 계속 중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규정된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¹³⁾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의 요건으로는 (1) 당사자가 동일할 것 (2) 소송물이 동일할 것 (3)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3) 요건은 문제가 없다. 또 외교통상부와 김종훈 본부장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은 같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2)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는 다른 청구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이외에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그 소송절차에서 확정’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¹⁴⁾ ‘외교통상부의 신뢰’와 ‘김종훈 본부장의 명예’라는 주관적인 피해법익의 차이는 이를 달리 취급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상 법리로는 당사자가 형식적으로 동

12) 헌법재판소 2006.06.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참조.

13) 이하 이 원칙에 관한 일반론은,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251-257쪽 참조.

14) 헌법재판소 2006.06.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관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외교통상부와 김종훈 본부장 간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요건은 조정 제도의 특수성상 소송에서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상 확립된 ‘개별적 연관성’이라는 기준으로 당사자적격 역시 확대하고 있다.¹⁵⁾ 그런데 대법원은 그 취지에 대해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¹⁶⁾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배후의 권리 주체와 단체가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 주체 대신 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권리 주체와 단체는 정정보도청구에 있어 하나의 주체로 보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역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전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은 정정보도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피해에 해당하는 정정보도, 김종훈 본부장의 피해에 해당하는 정정보도 이런 식으로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연대채권의 법리와 유사하게,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만 받아들여져도 모든 피해자의 목적이 달성되는 셈이므로, 같은 기사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자들 간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상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지므로,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신청은 중복 조정신청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의 조정이 성립된 후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때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물 및 양 당사자 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김종훈 본부장은 기관력이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시적 범위 내에 있는 주체가 되어 그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반복금지설). 즉, 외교통상부의 조정이 인용되었다면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목

15) ‘개별적 연관성’에는 일반 민사상 당사자적격자와 상통하는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자 이외에 간접적인 연관성 있는 자도 포함된다. 조준원,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 한울아카데미, 2005, 246쪽 참조.

16) 대법원 2006.2.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적까지 달성된 것이어서, 기각되었다면¹⁷⁾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과 같이 조정의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김종훈 본부장의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신청된 외교통상부의 조정에 참고인 등의 지위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외교통상부와 김종훈 본부장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므로¹⁸⁾, 위와 같은 논리 구성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조정을 시험 삼아 지켜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자 그제야 조정을 신청한 자의 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만약 김종훈 본부장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될 경우 두 조정 신청이 모두 인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겨레신문은 정정보도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고, 조정의 내용 간 모순이 생길 수도 있으며, 절차경제에도 반한다. 실제로 김종훈 본부장 측도 마치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는지, 한겨레신문이 외교통상부와외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송¹⁹⁾이 계속되던 중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64조를 적시하였다.²⁰⁾ 즉, 소송물을 아예 달리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려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는 것이다.

17) 우리 언론조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개별적 연관성을 본안 전이 아닌 본안 단계에서 판단한다. 이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이행의 소이므로, 주장만으로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일반 민사상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승선,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0-53 쪽 참조. 따라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어 조정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개별적 연관성이 긍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고 논한다.

18) 대학교와 총장이 함께 신청한 2011서울조정655, KBS와 KBS 부산방송 총국장이 함께 신청한 2011부산조정20, 강릉시청과 시장이 함께 신청한 2011서울조정920 등 실제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편저, 『2011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2, 270-459쪽 참조.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13593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6. 선고 2011가합116282 판결 참조.

쟁 점 3 : 보도의 허위성 여부

- 추가협상을 '약속했다' 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가 -

▶ 신청인측 입장

황 지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보도내용은 왜곡과 과장이 심하다. ‘indicate’은 국내의 유수의 사전에 근거하여도 통상적으로 ‘나타나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정도의 뜻을 가질 뿐 ‘약속’의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untouchable”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서 쌀 개방이라는 영역이 불가침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재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revisit’이라는 단어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에 다시 관세를 논의하자는 것이지, 결코 FTA에서 쌀 논의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본 기사는 전적으로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위키리크스의 출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부분 해킹과 스파이 활동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에 의하면 불법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의 공개 및 누설 행위까지도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하여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²¹⁾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적법한 청구는 무의미해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취지는 퇴색되어 무차별적으로 국가기밀이 노출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즐리안 어센지에 의한 1인 체제인 위키리크스에서 어떤 정보가 취합되고 노출되는지도 주관에 의해 선택적이며, 유출 과정

21)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관련, 대법원 2011.3.17.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으므로 신뢰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물론 언론이 합법적인 루트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 탈법적 취재 및 보도 관행이 공익을 위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관행이 규범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 자료 및 영문 정보, 그리고 특히 위키리크스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각종 무리한 확대 해석 등은 더욱 그 정당화를 어렵게 한다.²²⁾

본 사건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면, 해당 기사는 위키리크스 원래의 문언과 비교해도 왜곡과 과장이 심하다. 종합 1면에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문장에 이어, 오피니언 31면의 사설에서는 ‘밀약’, 그리고 김 본부장이 ‘거짓말, 권한 남용’ 및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을 약속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indicate’은 국내의 유수의 사전에 근거하여도 통상적으로 나타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정도의 뜻²³⁾을 가질 뿐 상호 합의하에 무언가를 예정하는 약속의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indicate’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모두 언급하다, 밝히다 등의 의미였으며 약속의 의미는 없었다.

한겨레 측은 원문에서 쇠고기, 자동차 협상을 언급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양보했으니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맞지 않을 뿐더러, 더 본질적으로는 외교적 ‘협상’ (deal)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도 하다. 외교협상의 현실을 생각하면, 대등한 주권국가 간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전의 불리한 협상 조건은 이후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즉, 이전 협상에서의 양보는, 나머지 협상에서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더욱 명확해진다, 쌀 개방 제한은 정당성이 높은 정책(deserving: 정당한,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우대조치)임을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나 정치 풍토 등 여러 근거를 통해 항변하고 있고, 특히 “untouchable”(비판 불가능한)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서 기존의 FTA로는 쌀 개방이라는 영역이 불가침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이는 오히려 쌀의 특수

22) “盧 위키리크스 전문, <조선>·<연합> 왜곡”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108&PHPSESSID=396fd40c660b3fe4efbf60dbcac33531

23)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성을 강조하여 FTA 내에서 별도의 추가협상은 차단하는 입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쌀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문장에서, ‘재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revisit’이라는 단어 또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에 다시 관세를 논의할 것임을 밝힌 것이지, 결코 FTA에서 쌀 논의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여 WTO 협정문에 반영시킨 내용이기도 하고, 쌀 문제의 불가침성을 항변한 앞 문장의 맥락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2014년이면 이미 FTA 내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지 7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 그 때 가서 발효 중인 FTA에 다시 변경을 가하자고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측의 계속되는 채근에 ‘7년 뒤면 어차피 WTO에서 쌀 관세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원칙을 확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기존의 WTO 협정 및 앞의 맥락과 합치하는 해석이 된다. 따라서 밀약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기사로 보도한 내용은 위키리크스의 원문에 의거하더라도 왜곡과 과장이 심하므로 명백히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언론 보도는 의혹을 제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상식으로도 수긍이 가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널리 인정되고 있다.²⁴⁾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필요하고,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이 허위보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그에 당연히 따라와야 할 언론의 책임은 소홀히 여기는 풍조는 자칫 위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유력 일간지,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신속하고도 엄청난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확하지 않은 보도는 언론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까닭은 공권력을 감시, 비판하여 정부에 대한 권력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해석이 필요한 외국의 자료 등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는 전문성을 지닌 언론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정확한 해석과 인용을 통해 전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언론의 고양된 책임

24) 대법원 2002.1.22. 2000다37524; 대법원 2008.2.28. 2005다28365; 대법원 2004.2.27. 2001다53387; 대법원 2006.3.23. 2003다52142 등. 가장 가깝고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대법원 2011.9.2. 2010도17237)이 있다.

의식은 국내외의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의혹 제기라는 이유 하나로 허위보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 정책 보도는 아니었지만, 언론 보도가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 하인리히 뵐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결과가 생생하게 나타난다.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는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부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기관은 일반 국민에게 접해있다는 큰 강점 덕분에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 비해 강자의 입장이 된다. 따라서 반대 당사자에게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차원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에 대해 정정할 기회를 폭넓게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나 민법상 불법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다만 종래의 보도가 허위임을 신속히 보도, 전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언론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고 하여 공공의 관심 영역에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정부정책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실을 알려주는 정정보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재 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겨레 측은 ‘indicate’ 라는 단어를 근거로 약속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전문에서 이 단어는 여러 번 쓰였는데, 모두 ‘언급하다’, ‘밝히다’ 등의 의미였으며 ‘약속’의 의미는 없었다. 약속한 사항이 없는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이를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무회의에도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 풀이한 것은 사소한 오류로 넘어가기 힘들다. 또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전체 기사의 약 8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정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게 해야 한다.”

언론보도로 개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여러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의 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하거나 취재보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반론·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각의 대응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리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 측에서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근거로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는 진실성이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즉,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화 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의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류를 수반한 언론보도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데 불가피하고 오류를 동반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측 주장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보도의 주된 내용이 진실할 경우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거친 표현 등은 진실성 판단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수단이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언론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있어야만 정정보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과실, 위법성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이런 지표들을 배제하고 정정보도를 인정하는 것은 정정보도의 근본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정정보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언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도내용의 오류를 수정한 진실 된 내용이 다시 보도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 민사상, 형사상 법적 소송과의 차이점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특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성립된 여러 가지 기준들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정보도는 그 목표상 보도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만 가리면 된다. 진실이 아닌 경우 그 부분을 정정해서 진실 된 내용을 보도하게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인지 또는 전부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부일 뿐이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부분적으로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도 진실 되게 바로잡아주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는 보도한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언론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반론보도의 경우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반론보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도된 입장과 다른 입장의 주장도 전달해서 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주장도 보도될 필요가 있지만 하면 된다. 목표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도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을 때라도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설령 진실이었어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론·정정보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구제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언론 수용자들에게 원래 보도내용의 오류에 대한 수정과 보도되지 않은 대립적인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소비의 균형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적이고 진실할 경우 언론은 면책된다.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때에도 언론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역시 면책될 수 있다. 손해배상과 형사사건에서는 일부의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과 보도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실성을 판단한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표현상 수사적과장이 있더라도 그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형벌을 부과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정정·반론보도와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한겨레 측의 주장은 이러한 제도상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언론중재 제도에서도 민사상, 형사상 판단 기준

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미 FTA 관련 문제가 된 이번 사안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도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에 합치되지 않으면 된다. 다른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이 일부라도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인용될 수 있다.

이번 토론의 다른 부분에서 논의되었듯이 한미 FTA 관련 이번 한겨레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 원래의 문언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종합 1면에서 ‘추가협상 약속’이라는 단어 사용에 이어, 오피니언 31면의 사설에서는 ‘밀약’, 그리고 김 본부장이 ‘거짓말’ 및 ‘권한 남용’을 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지만 위키리크스 전문 어디에도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을 약속한 내용은 없다. 한겨레 측은 ‘indicate’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나타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가 이번에만 약속의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indicate’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모두 언급하다, 밝히다 등의 의미였으며 약속의 의미는 없었다. 한겨레 측은 이 단어를 근거로 약속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냈지만 통상적인 해석에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쌀 협상 관련 마지막 문장에서 ‘revisit’이라는 단어 또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에 다시 관세를 논의할 것임을 밝힌 것이지, 결코 FTA에서 쌀 논의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앞 뒤 문맥을 봐도 쌀 협상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다시 논의하자고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밀약, 거짓말 등의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명백하게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한겨레 측에서는 이번 보도가 가치관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의 해석을 가치관에 따라 달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론 보도에서 기자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단순한 해석은 가치관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로 풀이된다.’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체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다. ‘풀이된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문사에서 기계적으로 덧붙인 말일 뿐이다. 독자들이 그 하나의 표현에 근거해 그 문장에 신문사의 가치판단이 들어있음을 알기 어렵다. 만약 이것을 근거로 하여 1면의 전체 기사가 의견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일간지 제1면의 내용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일으킨 뒤 ‘의견일 뿐이었다.’고 발을 빼는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결국 어느 측면으로 보나 이번 한겨레의 보도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정보도가 인용될 수 있다.

언론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여론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로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진실보도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호불호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약속한 사항이 없는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이를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무회의에도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 풀이한 것은 사소한 오류로 넘어가기 힘들다. 종합 1면의 기사는 헤드라인과 부제에서 모두 위키리크스의 문서로 공개된 내용임을 밝혔고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하여, 사실상 이 내용이 기사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 이는 포머로이 의원의 발언내용을 제외한 약 81%에 달하는 비중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보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정정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게 해야 한다.

▶ 피신청인측 입장

김 규 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약속했다’고 명시하지 않고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닌 언론사의 의견표출, 즉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한-미 FTA 협상과정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보도는 큰 틀에 있어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FTA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의혹제기였다. 판례에서도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의 활동을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문제가 되었던 한겨레신문 2011년 9월 15일자 1면 기사를 보면,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약속한 것

으로 풀이된다.’ 라고 작성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 ‘추가협상을 약속한 것’ 이라고 의미부여를 한 것이므로 사실의 문제가 아닌 언론사의 의견표출, 즉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키리크스 문서에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김종훈 본부장), 그리고 한-미 FTA 비준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포머로이 의원의 대화내용이 등장하고, 여기서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FTA 미국 비준을 위해 세 가지의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3대 조건은 바로 쇠고기와 자동차, 그리고 쌀 개방문제였다. 위키리크스에는 김종훈 본부장이 이에 대해 하나하나 대답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쇠고기와 자동차 관련 부분은 김종훈 본부장과 포머로이 의원의 대화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2008년 김종훈 본부장의 예견과 비슷하게 한미 쇠고기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 자동차 부분이 쟁점이 된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 미국 비준을 위한 3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쌀과 관련된 발언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종훈 본부장과 포머로이 하원의원의 대화내용 그대로 2008년 쇠고기 협상과 2010년 자동차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4년에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보도이다. 또한 김종훈 본부장 등이 국회에서의 신속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쌀시장 개방 문제는 쌀 쿼터제가 종료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역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사는 이를 근거로 언론인의 해석과 가치판단을 하여 종합 1면과 8면 기사를 작성하고 오피니언 31면의 사설을 쓴 것이다.

“쌀로 화제를 전환하여, 포머로이 의원은 FTA에서 이 문제가 빠졌다고 말했다. 쌀의 제외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쌀 생산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한-미 FTA가 균형 있고 포괄적이라는 인식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규모가 작고 급속히 노령화 되고 있는 농업인구(한국 농업 인구는 총 인구의 6%에 불과하며, 농업부문은 GDP의 3%를 차지한다)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당한 공공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쌀 생산농민들은 현 시점에서(at this time) 쌀 문제를 거론하기가 힘들만큼 충분한 공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에 2004 세계무역기구(WTO) 쌀 쿼터 협정

이 종료되면, 한국정부가 쌀 문제를 재논의(revisit)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Wikileaks 중에서

포머로이 의원과의 대화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at this time’ 이라는 시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2014년을 언급하며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돼 있지만 WTO 쌀 쿼터협정이 끝나면 재논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김종훈 본부장의 위와 같은 언급은 쌀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이 사건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2011. 9. 15.자 한겨레신문 1면, 8면에 걸쳐 게재된 기사(제1면 중간에 “관련 기사 8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인데, 제1기사에서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곧이어 ‘이는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 된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들을 읽는 독자로서는 이후의 기사에서 나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쌀 추가 협상 약속’이라는 표현을 한겨레신문사의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를 전제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가 공인에 관련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인식해 보도했다고 해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해당 보도는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청구인 측에서는 재논의, 즉 ‘revisit’ 이라는 단어는 결코 약속, 즉 ‘promise’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겨레신문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 명확한 표현을 피하고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외교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종훈 본부장의 당시 발언은 쌀시장 개방 자체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키리크스 전문에서는 ‘revisit’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과정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한겨레신문사의 이번 보도는 큰 틀에 있어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원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 system of free trade)와 보호무

역주의(保護貿易主義: protectionism)가 대립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쌀 산업 및 농민 보호에 관한 중요한 쟁점으로서, 무역정책에 관한 이념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이다. 즉 언론은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어젠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기사는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언론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공익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한다면 언론으로서 취재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 받게 된다. 기자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진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환경 하에서는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공적 사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권력에 대한 통제와 고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어 하나하나의 해석을 문제삼아 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쟁점 4 : 조정과 위축효과

-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
국가기관의 오보 대응방법으로 적절한가 -

▶ 신청인측 입장

위 보 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보급률과 포털 이용 빈도, SNS의 보편화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오보의 파급력은 막대하다. 옳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진실이라고 오신하는데서 오는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가기관이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여 공정한 언론보도의 방향성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언론사의 자체적인 사전검열을 야기하고, 그 결과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 언론의 질적 수준 및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 빈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가장 진입장벽이 낮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이용률을 자랑한다. 그런데 언론의 중심이 지면에서 인터넷 뉴스로 옮겨지면서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 근거한 취재를 하거나 아예 이를 인용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고, 포털사이트는 보도를 여과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언론보급의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잘못된 보도가 있는 경우 일개 언론사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여타 언론사의 공동 오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인터넷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SNS의 보

편화는 잘못된 언론보도를 무비판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를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의 요청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를 수인하라고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잘못된 언론보도가 여과장치 없이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옳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진실이라고 오신하는데서 오는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가기관의 오보대응 해결책으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국가기관과 언론 간의 대립관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부차적으로 한국 언론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할 정도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회의를 감추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다양한 언론매체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극적인 보도 경쟁이 잇따르고 언론보도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나 이를 담당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합리적인 개인의 판단력 범위 안에서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위축효과를 우려하여 국가의 정정보도청구를 부정하기 보다는, 국가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여 공정한 언론보도의 방향성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사안이 조정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 자율적인 해결을 목표로하므로, 언론사는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전개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 22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이를 소로써 다룰 수 있으므로 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정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분쟁의 해결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정치의 어두운 역사는 국가를 언론의 탄압자로, 언론을 권력에 대항하는 투사로 인식시키는데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언론 역시 거대화되어 권력의 한 중추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 등을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공정한 언론보도를 이끌어 내어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고 정

의롭게 행사할 수 있게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김 지 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이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넘어 신속한 구제를 통한 진실 발견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있으나, 현재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언론의 거대한 독과점기업화에 따라 언론매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용이 배제된 채, 국민은 일방적인 정보의 수령자의 지위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취지와 국가기관과 언론과의 관계, 국민의 알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기관의 언론조정 신청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유의 제도로서 정정 및 반론보도제도가 지향하는 독자적 영역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까지도 요하지 않는 바, 이는 언론피해구제소송이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넘어 신속한 구제를 통한 진실 발견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공정한 여론 조성에 복무하는 언론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적격의 확대의 요청은 필연적이고, 실제 우리 법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기관)의 언론에 대한 우월적 권력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론보도의 자유 위축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언론기관의 거대한 독과점기업화에 따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언론매체에 국민의 접근·이용이 배제된 채, 국민은 일방적인 정보의 수령자의 지위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은 헌법적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물론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주체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액세스권의 구체적 발현제도로써의 언론조정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도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혹자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오보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정 및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칭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우위성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 그 자체를 억제하려 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와 언론과의 현대적 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기관만이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이것이 방송 및 신문이라는 파급력 강한 수단을 매개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구 등에 의한 언론조정의 증가 현상은 국가와 언론기관이 과거의 사전 검열이나 비정상적인 권언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단순히 약자의 지위에 머물지 않으며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조정에 임해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언론조정 신청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언론 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 조정은 언론기관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후속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대립적 견해 혹은 원래 내용에 대한 정정 내용을 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조정 신청 자체는 보도내용의 공공성 여부를 이유로 언론의 면책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와 그 차원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적인 인물이나 정치적 사안 등 대중의 공적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언론기관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및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의 위법성을 조각시킴으로써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벗도록 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즉, 이는 본안에서 언론의 면책범위를 결정하는 논리에 해당하며, 언론 조정(및 소송)의 당사자적격의 범위 여부와 다른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조정에 있어 그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도

내용의 공공성을 이유로 면책을 확대하는 최근의 법리와 배치된다고 보기가 어렵다.²⁵⁾

▶ 피신청인측 입장

라 기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은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 의미를 해석하며 정치 및 국가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한 언론매체일수록 정부의 집중적인 언론조정중재신청 대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각성이 검증되었고 미국 27개 주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통제와 자유의 경계에서 정부와 언론은 필연적으로 각각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두고 서로 충돌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언론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은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 의미를 해석하며 정치 및 국가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공적인 이슈화하여 사회적 과급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알권리가 증시되는 공적영역에서 만큼은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어야²⁶⁾만 한다. 현재 한국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여 정보

25) 이승선,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년 여름 통권 3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p190-191.

26) 국민은 언론이외에 공적인 정보에 접근할 루트가 적다. 그렇기에 언론은 정부기관에 대한 의혹과 비리를 짚어내고,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언론의 과급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급격한 민주화를 겪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언론 매체의 논조에 따라 보도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국민은 기사를 무조건

접근권과 민주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지만, 아직도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한 신문매체 일수록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청구의 집중적인 타깃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막강한 자체적인 홍보수단이 갖추어져 있으며, 언론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힘의 균형을 위해 조정기구와 사법부가 의도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미국에서의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법안'이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금지란 국가기관 및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략적 봉쇄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각성이 검증되었고 미국 27개 주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법안에 의해 정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참여 또는 공론을 봉쇄할 목적으로 공적 관심사나 쟁점에 대해 언론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금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송은 (1) 오로지 피고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2) 원고가 소장에서 제기한 사실적인 주장들이 모두 진실임을 가정하더라도 법리상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에 조기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변론준비 기일을 잡아 위 각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심리해야 한다. 소송을 미리 심리하여 조기에 각하하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사전에 차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언론소송을 제기 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한 차원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본 사안 역시 일종의 봉쇄소송으로 해석되는데, 쌀 개방 협상 문제에 관하여 외교통상부는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은 개인 자격으로서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소송으로 묻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사후적인 언론 활동을 막기 위함이다.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권 남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다. 첫 번

적으로 믿지 않는다. 언론은 다양한 문제는 제기하고, 국민은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서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통제하기 시작할 경우, 국민은 선택의 가능성부터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언론은 취재를 할 때 오보를 최소화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째 예는 2007년 1월 육군 무기체계사업단의 중대급 마일즈(MILES · 다중통합레이저교전장비)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보도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마일즈장비들이 국산 개발 사업임에도 관련 업체가 국방부를 속인 채 미국의 도태 장비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보도했다. 육군 사업단은 국방일보라는 막강한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몇 일째 연재한 데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와 형사고발을 하며 언론을 압박했다. 하지만 방산비리는 사실이었고 탈세를 통해 부실장비를 불법으로 공급한 업체가 중대급 마일즈 사업마저 맡아 또다시 수백억원의 국고가 축이 나고 국가안보에도 위험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²⁷⁾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국가정보원)과 박원순씨 간의 언론 분쟁이다. 당시 희망고문 상임이사였던 박원순씨는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 이상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시²⁸⁾했다.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론이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즉,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범자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이때 현저히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시는 국가가 소송남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고,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판시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반영된다.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국가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국가기관의 당사자적격과 입증책임은 매우 엄격히 인정하고 있지만, 봉쇄소송 금지의 일반적 원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주장

27) 정충신, <<국가기관의 정정보도 · 반론보도 등 중재신청 청구와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 현직 언론인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출판 2009. 8

28) 2009가합103887,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혀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

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같은 소송을 조기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고 있지 않아 각하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이 거의 끝날 무렵에나 각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그 법리가 소송제기행위의 부당성을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의 소송부담을 줄여주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기관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전에 심사대상이 되어 오로지 그 목적이 언론의 보도를 차단하기 위함일 경우 조기 각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송의 경우, 이렇게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로 대처하고, 조정 및 중재신청에서는 국가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제한해야만 한다. 국가기관이 언론사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신청을 할 수 있듯이 권력의 균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조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고 조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소송이라는 타율적인 방법이 아닌, 언론과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된다는 점과 비용이 무료라는 점은 소송의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의 모든 생활 주체들이 언론에 대한 피해로부터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합리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의 경우,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중재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대통령과 언론과의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고,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뒤 ‘정정보도청구권’을 무기로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가 국가기관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때 정부기관의 평가가 정정보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구했느냐에 의해 판단되기도 하였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해주어 피해자, 특히 국가기관이 반론권을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언론개혁 추진이 조급하게 진행되어서 개혁 방안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들은 이를 반영한다.

국가기관이 국가업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은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일찌감치 주장²⁹⁾되어 왔다. 언론학계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인해 반론권이 남발되면서 의혹보도 제기 등 정부에 대한 감시 고발 기능이 심

각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다수의 언론사와 현직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된바 있으며, 특히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논조의 언론의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계속 받으며 직권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까지 간 경우가 많아 시작은 조정이었지만, 소송으로 번져 이로 인한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언론계는 위원회가 정부측에 유리한 문제 해결기구라는 입장인 듯하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언론 중재법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가 중재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를 언론과는 배타적인 기구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인격권보호의 이익과 언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조정신청을 국가권력 남용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현직 신문발행자, 언론인 이외 일반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외국의 신문평의회 사례처럼 언론인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기사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고, 언론사 자체의 옴부즈만제도³⁰⁾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언론의 자정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를 다양화하면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자율적인 규제기구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병행하면 언론이 중재제도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양화와 자율화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되어주는, 정당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9)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은 제14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적인 실행을 통해, 국가기관 역시 정정보도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일견 정정보도청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주체로 등장하는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권리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는 요청은 현재 역시 수용하고 있다. 그 예로 헌법재판소 역시 언론사의 보도권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도가 단순 소명에 의해서도 가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만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사인의 명예 또는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양자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9).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비록 허위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므로 그러한 제도로 인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최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30) 경향신문에서는 외부언론인과 전문가, 일반인, 학생을 언론옴부즈만으로 자체 기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행한다. 외부적인 시각에서 기사의 평가를 받고 시정해나가고 있는 자정작용으로 보인다.

보론 : 불법소스 사용의 문제점

- 불법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 문제 -

현 재 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Wikileaks는 해킹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획득한 경우가 많은데, 언론이 이를 인용한 경우에 상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위법행위를 통한 취재를 긍정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Wikileaks 기록은 그 속성상 국가기밀 내지는 비공개자료인 경우가 많아 언론이 그 진위를 독자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한다면, 언론은 중요한 제보나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Wikileaks와 같이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부 등의 다른 당사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묻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전은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명예훼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아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르게 벌하고 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쁘다는 우리 입법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아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라는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곧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둔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권력을 감시하

고 견제하여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특별히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우리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전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ii)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된다. iii)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면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비록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과실범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을 벌하지 않으므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행위자가 민사책임, 곧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형법은 불법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택한 자를 벌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하지만, 민법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공평에 맞게 부담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최후의 관문이 되는 것은 위법성이다. 행위자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면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언론,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³¹⁾ 비록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 는 것이다.

한편 그 상당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공적인 관심사안에

3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 보도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³²⁾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³³⁾

이제 위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한겨레신문사의 보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Wikileaks 전문의 진위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Wikileaks 전문이 사실이 아님을 들어 한겨레신문사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한겨레신문사가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³⁴⁾ 따라서 이 사건 한겨레신문사의 보도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협상에 직접 나섰던 김종훈 본부장과 외교통상부 밖에 없으므로, 입증을 위해서는 韓-美 FTA 협상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Wikileaks 전문의 진위 여부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Wikileaks 번역의 부정확성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피해자들은 Wikileaks 전문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번역이 부정확하여 보도가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Wikileaks는 일종의 내부고발 사이트로서, 그 정치적 정당성과 진실성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도 Wikileaks 기록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과는 달리 그의 진위여부 자체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이 Wikileaks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그 기록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가 있을 수

3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3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6. 5. 12. 2004다35199 판결

3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있다.

이 경우에 Wikileaks의 인용이 위에서 본 ‘상당성’을 갖춘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언론이 Wikileaks 기록을 인용하는 경우, 독자적인 교차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곧바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Wikileaks 기록은 그 속성상 국가기밀 내지는 비공개자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그 기록의 진위를 독자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한다면, 언론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제보나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당사자의 인격권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Wikileaks와 같은 사이트의 인용이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에는 또 다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들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으므로, 언론이 자칫 특정한 의도를 가진 집단의 유언비어 전파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자료획득 방법과 대비되는 것으로, Wikileaks는 내부자로부터의 기밀 유출, 혹은 해킹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획득한 경우가 많은데, 그 기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상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위법행위를 통한 취재를 긍정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이른바 ‘안기부 X-File 보도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대법원은 안기부 X-File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 내용 자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실을 불법 감청, 녹음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³⁵⁾ 한편 대법원은 불법 감청 내지 녹음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공개 내지 누설을 봉쇄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불법 취재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³⁶⁾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만일 X-File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한다면, 불법에 대해 상당

3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36)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앞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Wikileaks의 자료는 국외에서의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료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 언론이 이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밀 누설이나 해킹 등의 위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행위를 통한 취재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비판기능과 허위사실의 유포 방지는 두 가지 공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Wikileaks와 같이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언론은 Wikileaks에서 인용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독자들이 그 신빙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Wikileaks와 같이 그 자료획득 과정에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집단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 등의 다른 당사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묻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언론보도의 상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 타 의 견

임 병 렬

(서울제4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정보도청구의 중첩 문제(쟁점 2)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신청인측에서는 외교통상부와 김종훈 본부장 양쪽 모두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김 본부장의 조정 신청은 적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먼저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절차가 진행중

인 경우라면 아직 정정보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 본부장에게도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교통상부가 청구한 정정보도가 이뤄진 상태에서 김 본부장이 그와 동일한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면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외교통상부에 의해 이미 이뤄진 정정보도의 내용 이외의 부분이나 김 본부장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오 광 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조정과 위축효과(쟁점 4)에 대한 토론 중 중재위원의 위촉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부에 유리한 문제 해결기구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외국의 신문평의회처럼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수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법률상 비록 중재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위촉 절차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1개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중재부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현직 부장관 사료, 1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변호사를 그대로 위촉하고 있다. 사법부가 중재부의 가장 중요한 지위의 실질적 구성권을 갖는 만큼 조정·중재 과정은 준사법적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3/5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대학 교수 등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위촉되는데, 지역 중재위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위촉할 만큼 중재위원의 위촉 절차에 편향됨이 없다고 자신한다.

외국의 신문평의회(Press Council)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신문윤리위원회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언론사에 의한 자율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이 낮아 불만 처리결과가 피해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언론평의회를 대체할 법정기구 구성을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했으나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대신 언론평의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1991년 PCC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작년 폰해킹 사건으로 PCC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결국 올해 5월 PCC 폐지가 최종 결정되었고 현재 새로운 기구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언론에 의한 자율적인 피해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록 타율적이라 하더라도 기구 구성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 학 철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업무 성격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의의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독립성 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12조에 따라 정부 예산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운영 등에 있어 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오광건 사무총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중재위원의 구성을 법률로 정해 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 의한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부기관에 의한 사건은 극히 적은 편이며 이에 대해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중재위원은 이권이 있는 직책이 아니라 명예직이므로 정치적으로 조정이나 중재에 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 **진행** : 박수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강서연, 김어진, 김진성, 노영진, 안용진,
이해영, 정세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중(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김정민(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 토론개요

제2세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4개의 실제 언론 보도 사례를 가지고,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오보와 상당성’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서울대 로스쿨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안되는 ‘법조윤리’ 과목을 폐강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사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이 학점을 변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사에서는 이론적 가능성만을 가정한 가상보도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출신지와 거주지를 비교한 〈별지 3〉 기사와 변호사 시험 커트라인을 사법시험이 아닌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한 〈별지 4〉 기사에 대해서는 분석/해설 기사에서의 방법론적 오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로스쿨과 언론사측 대리인으로 역할을 분담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참석한 2명의 조사관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논의사례〉

〈별지 1〉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

(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별지 2〉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

(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별지 3〉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

(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별지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

(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 사례 및 쟁점소개

박 수 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올해 기준으로 여러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로스쿨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대략 26,00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먼저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기사가 약 9,000건인 것과, 경영전문대학원 관련 기사가 약 10,900건에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만큼, 그와 관련한 오보나 일방적 내용의 기사가 제법 많이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요청한 사례는 단 1건(2011서울조정163)³⁷⁾이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에서 2011년 2월 12일 「'실무수습'이 사실상 면접... 재학생들 로폼에 목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출신 로스쿨 진학생의 수가 100단위가 차이나는 오기가 있어 바로잡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본격적으로 진위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명백한 정보의 오기에 해당하여 조정에 돌입하기 이전에 합의되어 수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별지에 언급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우려와 사법시험폐지에 대한 반감, 일명 '돈스쿨' 논란에 이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학생의 가정환경분석, 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의 퇴색화, 학점뺏기기 논란 등을 이유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력부족문제 등이다.

- <별지 1> 기사 관련

본 토론회에서 다룬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제목의 기사에서 쟁점 사안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및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첫째로, 2011년 법조윤리과목과 법률정보조사 및

37) 2012부산조정20 사건의 경우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로스쿨 장학금을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스쿨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법문서작성 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2학년의 130여명이 실제로 본 과목을 수강했다는 점, 둘째로, ‘법조윤리’라는 과목의 이름이 주는 인상상 법조윤리가 로스쿨의 학원화 때문에 폐강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윤리’도 없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이 문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되는 조선일보측에서는 첫째로, 본 기사의 ‘법조윤리’ 등의 과목의 오보 부분은 전체 내용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둘째로 본 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그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 <별지 2> 기사 관련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제목 기사에 대해 논의 가능한 사안은 이론적 가능성을 실제 현상인 것처럼 실증적인 자료 없이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이다.

신청인 격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첫째로, 현실적 자료 없이 가상적 예시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둘째로 확인된 바 없는 학점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한 부분, 셋째로 학점 인플레이션과 학사경고자의 수가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피신청인 격이 되는 중앙일보측에서는 첫째로 일반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부여 제도에 허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예시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둘째로 본 기사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이지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가능할 것이다.

- <별지 3> 기사 관련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제목의 기사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사법연수생을 비교할 때 사법연수생은 ‘출신지’를,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 부분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신청인 격인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 ‘출신지’와 ‘거주지’가 동일기준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며, 그 외 비교군의 연령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계자료를 분석한 기사에 있어서 비교군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방법론적 오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격인 중앙일보에서는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엄연히 ‘의견의 표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맞설 수 있을 것이다.

- <별지 4> 기사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었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제목의 기사의 경우도 같은 법조직역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커트라인 점수가 동일하게 40점대인 것을 누락하고 커트라인이 60점대인 회계사 2차 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기사작성시 비교군을 결정하는 문제가 ‘사실적 주장’의 문제인지 ‘의견표명’의 문제인지가 논의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기사를 살펴보고, 각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역할에서 가능한 논점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미래의 법전문가로서 감정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보다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관련한 법적 논점을 검토해보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호 검토해보는 발전적 토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쟁 점 1 : 오보와 상당성

- <별지 1>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안 용 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과목이다. 단지 전산상의 코드 변경으로 인해 폐강으로 기재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폐강의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본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히 오보이며,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에게 서울대 로스쿨생의 기본적 소양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할 만한 사회적 평가저하를 야기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부분의 오보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이 수강하였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오보이다.”

별지 제1기사에 대해 로스쿨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 학사과정 중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폐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정정보도청구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사안의 쟁점은 세 가지로 (1) 기사 내용 중 일부의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당해 기사의 내용이 로스쿨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언론사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정정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는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과목이다. 단지 전산상의 코드 변경으로 인해 폐강으로 기재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폐강의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본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히 오보이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기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세부내용의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언론사측은 반론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의 오보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이 수강하였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오보이다.

또한 기사의 자료가 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폐강 과목과 수를 살펴보면 문제가 된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론사측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는 2011년 1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3개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었다고 하여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의 폐강이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 61.5%에 달하는 8개 과목이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이다. 따라서 이들 과목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폐강된 강의는 5개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약간의 차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기사에서 단지 한 두개 과목의 폐강여부만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언론사측 반론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단지 일부과목의 폐강이라는, 표면적으로 적시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도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의 판시내용은 지금까지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단지 오보된 사실 자체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자 전체의 취지와 가지는 연관성, 사용된 어휘가 사회일반과 독자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역할, 인상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 사안에서 법조윤리가 폐강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한개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 기사의 전체적인 성격은 로스쿨 학사운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있고, 그 초점은 ‘로스쿨 학원화’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조윤리의 폐강이란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취질 수 있다. 또한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일반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람들의 눈에 법조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집단이고 따라서 윤리는 이러한 직업적 소명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는 법조윤리과목을 학생들이 외면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결여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몇몇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수습 현장에서 ‘어떻게 법조윤리도 안들었냐’는 핀잔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기사에 근거가 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것이고 그 출처가 국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만큼 기자는 이를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언론사 측 반론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기자의 주의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특정 집단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비판적인 기사에서 일수록 진실을 확인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조윤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공 이수과목으로서 로스쿨 학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관계자나 로스쿨 학생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에 의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1997.9.30. 97다24207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볼 때, 우선 사실확인 및 검토작업이 다소 시간을 지체시킨다 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15개 대학 각각의 모든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조윤리 과목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품고 간단한 전화 문의나 심지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것이 전공필수과목으로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이 의미가 없는 사실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로스쿨에 대한 유례없이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정확한 사실에 의한 보도는 로스쿨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양산하여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언론은 이러한 ‘피해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로스쿨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당해 기사에서는 보다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본 기사에서 문제된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것이 오보로 입증되면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는 전제하에, 본 기사에서 법조윤리가 폐강되었다고 적시된 부분은 일반인에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윤리소명 의식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비록 기사의 자료가 국가기관에서 제공된 것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자의 사실확인 및 주의 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당해 사안처럼 단순한 사실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의견이 포함된 기사에서는 더욱더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언론사측 입장

노 영 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비록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상에서는 폐강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윤리 등 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사의 전제가 된 폐강과목에 대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언론기관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다.”

<별지 1> 기사에 대한 논의의 주된 쟁점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와 오보 입증 시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오보가 공신력 있는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제공된 문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사의 오보 사실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두 과목의 폐강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실제로 법조윤리 등의 과목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상 필수과목으로서 2011학년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해당 학년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비록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강 코드의 변경으로 인한 전산상 처리 오류에 말미암은 현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지되는 객관적인 자료상에서는 폐강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기본적인 폐강의 사실조차 사실이 아님이 인정된다면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

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과 같이 기사의 오보가 문제되는 경우에 설령 피해자 측에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오보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에서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즉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 볼 때 일부의 폐강 사실이 실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사 전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수강생이 집중되는 로스쿨 학원화에 대한 반증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소한 내용에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정정보도가 요구된다면 언론은 스스로 사전검열을 하여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전산상 폐강으로 기재된 과목들에 대한 오보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오보 사실이 입증되어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여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사의 오류가 인정되고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적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실제 폐강되지 않은 법조윤리 등의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전체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은(제5조 제2항 제2호)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설령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이는 설령 기사에서의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며, 대법원 또한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실시되고 있다.

기사의 전제가 된 폐강과목에 대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전달된 자료이며, 국회의원실에서는 그 자료를 정부관계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언론기관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사안에서 설령 기사의 내용이 법조윤리를 학생들이 기피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었다고 치더라도, 본 기사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판기능은 언론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신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경험이나 당사자에 대한 취재가 아닌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기사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의 일관된 입장

가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기사 내용의 정확함은 언제나 담보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기사 작성자를 상정하여 언론기관의 주의의무를 문제 삼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보도 행위라는 역할 수행에 국한된 것일 뿐 기사내용이 될 사안 자체에 대해 전문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실제 현실에서는 방대한 제보와 보도경쟁에 시달리는 기자들보다 보통의 일반인이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경우가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기사를 작성하는 자가 언제나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본 기사의 경우 15개 대학에 대해 수십 개에 달하는 폐강과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기사의 신속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물론 기사 작성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의 용이성을 이유로 비록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전달된 자료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언론기관을 비롯한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이 전공필수과목인지, 폐강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주의를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료상으로 볼 때도 일부 대학(전남대학교)의 경우 ‘학과요청에 의한 폐강’이라는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수강신청 미달의 경우와 구별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자료 자체의 문면상 자료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하여 주의의무를 가지게 할 만한 별도 기재 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언론기관이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사실 확인이 관계자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통한 확인에 의해 용이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제공된 문서보다 진실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언론기관으로서 가장 진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도 자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경우에는 진실하다 믿을 상당성을 인정하여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언론보도의 허위가 밝혀지고 입증되어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를 작성하는 측에서 볼 때 자료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언론기관은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사의 제목부터 다소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됨으로써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기사에 공감할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기사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의 폐강 사실이 실재가 아니었다는 매우 작은 부분밖에는 없다. 그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수강이 이루어진 바 있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오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정보도는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과목의 폐강에 대한 기사만으로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쟁 점 2 : 가상보도와 공공의 이익

- <별지 2>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강 서 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철회를 하는 가정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가상 상황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가상’으로 제시된 내용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제목과 본문에 “웬만하면 A, B학점”이라는 내용을 매우 강조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대해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곤란하다.”

중앙일보 2012.02.23.일자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뺑뺑기 꼼수>의 기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현황이나 수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 조정·중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는 ‘가상’으로 제시된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2조 17호의 정의조항에 따르면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

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록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이 반론보도를 신청한다면, “로스쿨생은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서울대학교 학사관리제도와 학점 분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수강신청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철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상 상황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실제 사정과 다르게 학사운영이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론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로스쿨의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기사에서는 학점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기사는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실제 학사운영이 가상적인 상황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를 검토해 본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근거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衡量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기사는 제시된 가상의 상황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본문에 “웬만하면 A, B학점”이라는 내용을 매우 강조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대해서 오인하고, 존재하는지 확인된 바 없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상적 상황의 제시라는 점을 이유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또한 본 기사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기사를 보면 처음에는 제도상 발생 가능한 가상적인 상황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중반부 이후의 보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의 중반부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이미 서울대학교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정적인 문장으로, 그러한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자의 수가 2명인 것의 이유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학사 경고자가 두 명뿐인 것은 온전히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학사경고자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면, 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의심해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상관관계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상,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학점인플레이션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서울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언급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학사 경고자 수와 학점 인플레이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 건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이 드러난 자료들을 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인과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단을 배열한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를 보면, 학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후에 바로 학사 경고자 수가 적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기사를 작

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서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일반인이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을 마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그러한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독자들 스스로 판단할 기회의 영역을 좁히고, 독자들을 오해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발 빠르게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특히,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언론인이 사실적 내용에 대해서 일반의 독자에게 오해를 사도록 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는 보도대로 나가더라도,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반론보도를 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반론보도의 액세스(access)권적 특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의 판례 또한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 또한 최소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사측 입장

이 해 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기사의 목적은 로스쿨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사안이다. 특히 기사 작성시 서울대측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론보도도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무시한 경우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 전달만을 위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어진 자료와 상황을 토대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도 작성하게 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추정적 기사가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고 독자들에게 그러한 추정적 사실이 현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언론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너무 쉽게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버린다면 언론사의 사회 비판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반대로 언론사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추측성 기사들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웬만하면 A, B학점...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라는 제목의 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사는 “웬만하면 A, B학점...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라는 제목 아래 로스쿨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쉽게 A, B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의 최초 수강신청자수 기준 학점 배분 방식에 의하면 만약 수강 신청인원의 반이 수강을 철회할 경우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바로 서울대에 학사경고자수 비율이 다른 학교 평균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후 다른 학교의 제도를 지적하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며 “성적 인플레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생은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서울대학교 학사관리제도와 학점 분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는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가상의 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현황이나 수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실제 사정과 다르게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사는 처음에는 제도상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반부 이후의 보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는 이미 서울대학교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정적인 문장으로, 그러한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학사경고자의 수가 2명인 것의 이유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

문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학사 경고자가 두 명뿐인 것은 온전히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할 여지도 크다고 주장 가능하다.

우선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사 목적은 로스쿨의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사는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이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발 빠르게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 발생에 대한 의혹이 가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언론의 문제제기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게끔 하는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학점인플레이션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서울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 하나만으로 기사가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사가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독자들을 오해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학사 경고자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면, 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상관관계는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상,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독자들에게 오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일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 학점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측에서는 공개된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개된 자료가 한정적이라면 결국 언론사에서는 추정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언론사에서 로스쿨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학교 측에서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거나 반론을 펴지 않는다면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기사의 내용을 크게 부인한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에 언급하였으므로 본 기사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즉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론보도도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측이 반박할만한 자료를 주었다면 이를 기사의 내용으로 삼았을 텐데, 서울대 측에 질의하였음에도 서울대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하지 않았다. 언론사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무시한 경우 이는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였거나 반론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의도와 달랐던 경우에는 반론이 허용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반론 보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러한 책무가 언론사의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변명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하는데 기자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기사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언론사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자료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기사 작성도 언론의 사회 비판 기능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 점 3 : 분석/해설 기사에서의 방법론적 오류

- <별지 3>, <별지 4>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김 진 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생의 ‘거주지’와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법조인의 ‘출신지’를 비교하여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가 더 많이 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비교군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교군의 연령대 측면을 간과하였다. 해당 로스쿨생의 연령대는 20-30대 초반인 반면에,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법조인의 출생지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42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커트라인과 비교함으로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

분석기사는 사실적 자료인 통계자료 및 수치 등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몇 개의 비교군을 설정하여 통계를 내고, 통계자료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도출해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분석기사내의 그 수치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분석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수치 자체는 진실하지만 비교군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앙일보 2012.04.11자 기사인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 이른바 ‘개천의 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스쿨 1~3기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강남 출신의 인원이 많았던(61.4%) 반면에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조인 8115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출신은 고작 18.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군의 설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는데, 첫째로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평균 나이인 20대 중반의 거주지는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출생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출생지보다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현재 국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절반이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대와 영남대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거주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욱 더 로스쿨생의 거주지 분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로스쿨생들의 거주지 조사에서 해당 로스쿨생의 연령대는 20-30대 초반인 반면에,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법조인의 출생지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42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기존 법조인에 관해서는 고교 평준화 이전의 기성세대의 정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 측면에서의 차이 또한 기사에서는 간과되었다는 문제점 또한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분석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기사들에 대해서 기사의 당사자가 언론 조정·중재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언론중재법 14조 1항의 정정보도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출신지 정보에 해당하는 그 수치 자체는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14조 1항이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16조 1항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는 어떠한가?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2조 17호의 정의조항에 따르면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

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록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위 요건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과연 비교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지, 그리고 만약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본다면 반론보도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기사에서 쓰인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통계자료가 왜곡되었다거나 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만약 통계자료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분석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표명의 영역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러한 입장에서는 반론보도 신청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신청뿐만 아니라 반론보도 신청 또한 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 기사를 쓴 기자의 본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기사에서 두 집단의 비교를 의미가 있도록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집단을 비교한 기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두 집단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면 이는 단순히 두 개의 자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추려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로 든 기사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 기준인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두 비교 기준의 동일성의 판단은 두 비교 기준이 실제로 같은지/그렇지 않은지의 판단인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2조 14호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와 출신지라는 두 개의 비교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은 개념 자체에서 이미 서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명백하다. 거주지는 통상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며, 출신지는 통상적으로 ‘한 개인이 태어났을 당시의 장소’임은 ‘어휘상’ 명백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서로 같다는 묵시적 전제를 하고 있는 언론 측에서 두 기준이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증명할 의무를 띤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것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안에서도 일반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별다른 붙임말 없이 전제되어 보도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이를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의견 표명으로 보기 보다는 두 개의 기준이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겠다고 생각할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준이 같은 내용이라는 의견의 표명을 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증명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더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개의 기준이 사실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라고 무심히 판단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보도기사이지,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반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자료는 숫자와 더불어 그 해석 또한 중요한데,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시와 같은 기사에서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를 통해 로스쿨생의 서울 집중 현상, 사는 집의 평당 가격과 로스쿨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우리 사회 현상으로서 지적하는 해석을 펼쳤던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기사의 의도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를 일반인들에게 시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붙임말 없이 다소 다르게 설정된 기사를 언론에 주어진 해석의

재량영역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즉, 통계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낼 수는 있어도, 언론의 반대측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이용한 전문적인 성격의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비교대상의 선정을 일률적으로 해석, 재량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사들에 대한 대응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통계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모두 언론 재량의 영역으로 두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진 수많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동일 선상에 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마치 같은 것으로 ‘기망’ 혹은 ‘날조’하여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교 기준 설정의 문제는 단순히 동일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비교 기준이 적절했는지의 문제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 2012.03.27.자 기사인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을 문제 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기사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을 공인회계사 시험의 커트라인과 비교하고, 같은 법조 직역의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비교하지 않음으로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판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액세스(access)권적인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언론사측 입장

정 세 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왜곡된 것이 아니므로 오보가 아니다. 또한,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

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 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다. 특히, 해당 기사는 언론의 보도기사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중앙일보, 2012년 4월 11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란다...」(조선일보, 2012년 4월 27일) 각 제목의 기사는 각각 거주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와 시험 점수 등 수치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이용한 기사들이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통계자료를 분석, 대조하여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지방 출신의 가난한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졌으며, 사는 집의 평당 가격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로스쿨에 진학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인회계사의 합격점수와 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통계나 수치 그 자체에는 왜곡이 없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비교군과의 대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첫 번째 기사의 경우, 로스쿨 측에서는 “거주지와 출신지는 동일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비교 기준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하여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 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이 법조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측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는, 본 기사의 경우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우선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실적 자료인 통계자료 및 수치 그 자체의 적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사는 로스쿨생의 거주지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로스쿨생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언론사 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는 현재의 사회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이 로스쿨의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피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향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의 경우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 측에서는 본 기사의 경우 통계자료가 왜곡되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할 여지도 없다고 항변이 가능하다. 한편 통계자료를 근거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분석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의견표명의 영역임을 주장할 수 있다.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불가능하다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표명”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교한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은 대치되는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것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에서도 일반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별다른 붙임말 없이 전제되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판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에 진학하는 평균 나이인 20대 중반의 거주지는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출생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출생지보다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절반이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대와 영남대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거주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조군인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기존법조인들로서, 대개 사법연수원 34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이전의 기성세대의 정보가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기사는 이와 같은 사실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간과한 채 작성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

극적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방법론적 오류에 대해 언론사 측에서는 본 통계자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 자료에 쓰인 통계임을 강조할 수 있다. 곧 대상 기사는 언론의 보도기사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항변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자료는 숫자와 더불어 그 해석이 중요하며 해석이 없는 숫자는 단순한 수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사 측에서는 통계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낼 수는 있어도, 로스쿨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를 통해 로스쿨생의 서울 집중 현상, 사는 집의 평당 가격과 로스쿨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사회 현상으로서 지적하는 해석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즉 기사의 의도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를 일반인들에게 시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주지와 출생지의 비교는 조사대상의 연령대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주어진 해석의 재량영역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계자료 자체는 사실의 영역이고 이의 해석은 의견표명의 영역으로서 언론사의 재량 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분법이라는 비판과 언론사의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가능하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성격의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비교대상의 선정을 일률적으로 언론사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재량의 영역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통계자료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석 기준 등이 기사의 핵심적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반론보도의 청구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두 번째 대상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조선일보의 2012년 4월 27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기사는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 점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실 40점대 초반의 커트라인 점수는 같은 법조 직역의 시험인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이다. 기사는 사법시험의 점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변호사시험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점수와 비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사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변호사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교한 한 변호사의 언질을 그대로 옮긴 기사 부분에서도 엿보인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 기사의 경우에도 첫 번째 기사와 유사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적시한 변호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점수는 언론사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선택한 사실적인 자료로서, 자료 자체의 왜곡은 없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하여 분석한 결론은 의견의 표명으로서, 사실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가능하다. 변호사시험과 회계사시험은 모두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며, 사법시험 2차는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점수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언론사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의 경우 첫 번째 기사와는 달리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기사의 주목적이 아니다. 기사 내용의 비중을 보면, 지면의 많은 부분을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합격자의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낮은 점수로 결정되었다는 부분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회계사시험과의 비교는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낮은 수치인지를 명시하기 위해 단 두 개의 문장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세세한 문장까지 곁고 넘어지는 언론보도의 자료해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실적 자료인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기사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언론사 측에서는 사실적 자료의 왜곡이 없음과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의견표명의 영역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성격의 기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자나 시청자들은 전문적 보도에서 언론사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사의 신중한 보도 자세와 반론보도청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김 문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우선 일부 오보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언론중재법 제 15조 제4항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판례는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엽 말단적인지의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별지 1> 기사의 경우 로스쿨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수강이 몰려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폐강이 된다는 내용인데, 폐강 되는 여러 과목 중 몇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사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 등의 몇 과목이 폐강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살펴보겠다. 명예훼손이란 결국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의미하는데, 취업 때문에 특정 과목에 몰린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인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로스쿨생 개개인을 표시하지 않고, 집단을 표시했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계룡대 납품비리와 관련된 해군 법무

장교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당 해군장교의 수가 25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대전 법조비리 보도사건의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대해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생이 약 45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명예훼손을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기자의 과실 여부인데,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적어도 과실은 있지 않나 싶다. 다만 이 문제는 위법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즉, 위법성 조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판례가 말하고 있는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검찰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통조림 제조업체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상당성을 인정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교과부의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발표한 것이므로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별지 3> 기사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적 주장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명예훼손 성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하는데 부유하다는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언짢고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기 보다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이 침해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만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로스쿨생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로스쿨생을 대표하는 단체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반론 외에 적극적으로 로스쿨의 입장을 보도자료의 형태로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정의 절차는 법원의 판결 절차보다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김 정 민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우선 이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면 청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보도의 취지는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학사 관리

의 주체인 각 로스쿨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수 있는데,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취지이고, 앞서 언급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고려할 때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보도에 대한 주요 쟁점인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도에서 로스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은 바로 ‘성적 인플레이’,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성적 인플레이’라는 표현은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사실적 주장을 근거로 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보도에서 의견 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 즉,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최초 신청자 기준으로 학점을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실제로는 학점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A나 B학점을 받는 학생의 수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한되어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등의 반론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쟁점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이 서울대 로스쿨의 수강신청 사례였는데, 해당 보도는 실제 수강신청자가 50명인데 만약 최초 신청자가 100명이었다면 실제 수업을 들은 50명이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근거로 무리한 추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록 그 가능성은 적다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단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아 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신청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실제 조정사례에서 많은 언론사측 대리인들이 항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권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정에서도 이미 당사자의 반론이 반영되어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반론을 요구하는 등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 타 의 견

정 재 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자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가려진 부분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사실을 공표하기보다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로스쿨 관련기사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로스쿨측을 대변하시는 패널들은 기사 중 일부분의 사실관계나 문장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의 실제적인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무언가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일종의 맥락이므로 기사내용 일부분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기보다 로스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기된 문제의 일괄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2세션에서 논의한 기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을 갔으니 돈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고,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사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는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반박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라든가, 로스쿨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강조해야 한다.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

정정보도 요건과 손해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정보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이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법과 판례이다. 따라서 첫 번째 논의사례에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사의 취재나 보도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당연히 정정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주체는 로스쿨 학생 개개인보다 각 대학 로스쿨이나 전국 로스쿨협의회가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건에 따라, 검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가 이뤄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국회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다고 보도한 이번 토론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상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상당성 충족의 핵심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이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취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가 서울대측에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면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는 부족하다.

두 번째 논의 사례인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뺑뺑기 꼼수’ 제목의 기사에서는 핵심 팩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2010년 “당시 로스쿨들은 A(25%), B(50%), C(21%), D(4%) 등의 비율을 정해 학점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 배분·학점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는데, 2011년도 각 학교별 실제 A, B 학점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언론이 확인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시 없이 ‘웬만하면 A, B 학점 ...’ 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는 주요 6개 학교의 로스쿨 성적 인플레이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 중 인플레이 방법 3개 모두를 채택한 학교는 없고 1~2개 정도였다는 점도 따져볼 팩트다.

세 번째 논의 사례에서는 로스쿨생은 거주지를, 기존 법조인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기존 법조인의 경우에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조인의 경우 서울출신은 고작 18.7%인데 비해 전체 로스쿨생의 61.4%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기사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김 종 량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재위원으로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저는 30년 이상 전북

일보에서 근무하였는데, 일선에서 취재할 당시와 현재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많은 차이가 있다.

심리에 참석해 신청인과 언론사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다 옳은 것 같다. 다만 언론사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허위보도나 오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앞서 당사자에게 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보도의 긴급성에 따른 시간상의 이유와 국회의원의 발표 등 여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며 취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취재 과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측에서도 과연 해당기사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된 기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겠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그 대응에 있어 유념해야 한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도 조만간 법조계로 진출할 것인데 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해 주기 바란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이나 중재위원의 자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현직 부장판사들이 중재부장을 맡아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8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중재위원은 직무상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중재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재위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부기관을 편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제 경험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기관을 비롯해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심리에 참석하다 보면 언론사측으로부터 언론계 선배인 중재위원들이 언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후배 기자들을 압박하고 언론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반면 신청인 중에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사 편만 든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중재위원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사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중립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별지 1〉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판검사 임용 · 로펌 취업 유리한 형사소송법 등에 수강 몰려,
국제법 · 지방자치법 등은 수강생 인원 미달... 다양한 법조인 양성 취지 퇴색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형사소송법과 상거래법처럼 판·검사 임용 또는 대형 로펌 취업에 도움되는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지만, 국제법·지방자치법처럼 취업과 큰 상관이 없는 과목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국 15개 로스쿨의 수강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서 올봄 개설하려던 94개 강의 중 13개가 수강 인원 미달로 폐강됐다. 폐강된 강의가 작년 2학기(7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원광대 로스쿨은 작년 2학기 2개에서 올봄 13개로 급증했고, 충북대·인하대·중앙대는 작년 2학기 폐강된 강의가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6·5·4개였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일부 또는 전부 폐강된 과목은 헌법소송법, 정당과 민주헌정, 헌법실무연습,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국제경제·통상법 등이다. 현대인권론은 수강생이 1명뿐이었다. 농업법, 한국근현대법사, 협상과 거래의 디자인, 현대정의론과 법, 중국법, 건설행정법, 조세법연습, 국제투자실무 강의도 수강생이 5명도 안 됐다. 특히 국제법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들 가운데 국제경제·통상법 과목이 수강생이 없어 폐강됐는가 하면, 국제투자실무(4명)·중국법(4명)·국제민사소송법(6명)·국제거래법개론(9명)·국제지적재산권(9명) 등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면 판·검사 임용이나 대형 로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분류되는 상거래법(154명)과 형사소송법(107명), 민법(91명), 회사법(80명) 강의 등은 수강생이 몰렸다. 작년 2학기에도 법무실

습(121명)과 민법(81명), 민사소송법(83명), 보험법(86명), 검찰실무(80명) 등이 인기 강의였다.

이 같은 수강생 편중 현상은 올해부터 강화된 학사 관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지난 학기부터 '학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수강생이 적은 강의는 학점 따기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평소 국제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안 되고 학점 따기도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연세대·고려대 등 10개 학교가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강 현황 공개를 거부할 만큼 수강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정종섭 원장은 "미국처럼 학사 관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나중에 법률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지 2〉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꿈수」(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졸업생 취업을 높이려 변칙 학점 배분, 재수강 허용
서울대 학사경고자 2명분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운데 주요 로스쿨이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대 등 주요 로스쿨은 변칙적 장치를 통해 '성적 인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학사관리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책정되면서 변호사 양산이 우려되자 로스쿨협의회에서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로스쿨들은 A(25%), B(50%), C(21%), D(4%) 등의 비율을 정해 학점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 배분·학점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최초 수강신청자 수 기준으로 학점을 배분함으로써 낮은 학점을 받는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특정 수업을 50명이 들었더라도 학기 초 100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면 최초 신청자 수인 100명을 기준으로 학점을 배분한다. 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C학점 이하가 약 12명(25%)은 나와야 하지만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수업을 들은 50명이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실이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학사경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15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2명(0.48%)뿐이었다. 학사 경고 대상은 ‘평균 학점 2.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이 같은 학사경고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25개 로스쿨 평균인 4.69%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전북대는 233명 중 18명(7.73%)이 학사경고를 받아 서울대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로스쿨 성적 부여 방식은 학부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수강신청 취소가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적 인플레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는 최초 수강신청자 기준 학점배분을 하는 대신 재수강 제도가 없다. 반면 대부분의 로스쿨은 C학점 이하에 대해 재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익명을 전제로 “성적이 안 좋으면 같은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재수강이야말로 ‘성적 바꿔치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등 미국 로스쿨에서는 성적이 나쁠 경우 학장 주도로 재수강을 명령한다. 재수강이 일종의 징계 개념인 것이다. 또 성적표에 원래 성적과 재수강 성적을 둘 다 기록한다.

이와 함께 고려대·이화여대 등이 시행하고 있는 학점포기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학점포기제는 졸업을 앞두고 낮은 학점을 털어버린 뒤 쉬운 과목을 들어 학점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성적이 법원·검찰에 들어가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되는데다 학교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로스쿨이 학점 부풀리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적을 어떻게 매기고 배분하는지는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협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성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지 3〉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탐사 기획] 전국 로스쿨생 5074명 분석해보니 로스쿨 1·2·3기생
주거지·출신대학·전공 분석 ... 고비용 구조에 사라지는 '개천의 용'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3학년 김모(32)씨는 지난 겨울방학 때 비아그라 복제약 생동성 실험에 참여했다. 3일간 '실험용 인간'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은 40만원. 김씨는 “지난 2년간 5000만원 넘게 쓰는 바람에 저축이 바닥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학 전 3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나도 이런데 부모 도움 없이 로스쿨에 다닌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451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로스쿨 변호사'가 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법조인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 이른바 '개천의 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로스쿨생 5명 중 1명은 강남 사람=탐사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개 로스쿨 1, 2, 3기생(2009~2011년 입학)의 거주지 정보(지난해 말 기준 5074명, 부산대·영남대 공개 거부, 아주대·연세대는 일부 학생 누락)를 확보했다. 분석 결과 전체 로스쿨생의 61.4%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조인 8115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 중 서울 출신은 고작 18.7%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비율은 27.2%에 달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이 낮은 금천(0.6%)·도봉(1.3%)·중랑(1.0%)구에는 수십 명 정도만 거주했다.

전체 로스쿨생의 거주지 비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9.4%로 제일 높았다. 서울대와 고시촌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초(6.4%)·강남(6.0%)·송파(4.3%)·동대문(3.9%) 순으로 강남 3구 거주 비율은 16.7%였다. 2010년 말 기준 강남 3구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3.2%다.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1% 이상 로스쿨생을 배출한 곳은 경기도 성남(2.31%)·용인(1.54%) 등 6곳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대한변협 기획이사로 로스쿨 업무를 담당했던 임치용(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제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의 우울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집값 높을수록 잘나가는 로스쿨 진학=경제력은 학생들의 로스쿨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지가 KAIST 이원재(사회학) 교수에게 의뢰해 로스쿨생 거주지 정보와 조인스랜드의 전국 시·군·구별 주택 평당 매매가 정보를 결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선호도가 높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1그룹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중 23.2%가 부동산 가격이 상위 25%(3.3㎡당 2433만원 이상)에 속하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살았다. 이 비율은 2그룹 로스쿨에서는 17.9%로 떨어졌고 3, 4그룹에서는 9%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하위 25%(3.3㎡당 786만원 이하) 지역 거주자 비율은 1그룹에서는 13.8%였으나 3, 4그룹에서는 각각 44.0%와 40.0%로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고급 상관관계 분석 방법(로그리니어)을 이용한 결과 로스쿨 2기생은 부동산 가격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그룹 학교 학생일 확률이 6%, 2그룹 학교 학생일 확률이 110% 증가했다. 3기생은 부동산 가격이 한 단계 높을 때 1그룹일 확률이 35%, 2그룹일 확률은 51% 늘었다. 이 교수는 “부유할수록 더 좋은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가설이 99.9%의 확률로 입증됐다”며 “1기생에선 떨었던 경제-학교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2, 3기생이 될수록 명확해져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선호도는 해당 학교가 최근 사법시험에서 보여준 성과로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41, 42기 사법연수생의 출신대학 정보(연간 평균)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뉘었다. 부동산 가격은 입학 직전 연도 주택 평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뉘었다.

◆비싼 학비와 스펙 보는 면접이 진입장벽=지역은 편중됐지만 출신과 전공은 다양해졌다. 기준

법조인에서는 51.1%에 달했던 서울대 비율은 로스쿨에서는 22.7%로 줄었다. 대신 연세대(6.5% →14.8%), 한양대(1.9%→4.7%)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법학 전공자도 현직 법조인은 68.7%였으나 로스쿨생은 40.8%로 낮아졌다.

신영미 메가로스쿨 신촌캠퍼스 원장은 “비법대 출신과 본교 학부 졸업생의 합격자 비율을 제한한 결과 대학과 전공은 많이 다양해졌다”며 “하지만 스펙과 경력을 보는 면접 반영 비율(10~40%)이 높아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 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한 데다 사립 기준 연 2000만원 정도인 등록금 부담도 만만치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에 대한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학비 때문에 로스쿨에 못 가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검정고시’ 격인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지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과락 기준만 간신히 넘긴 수준... “당장 제 역할 가능할까” 지적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법무부는 지난 23일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1665명 가운데 720점 이상을 받은 1451명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합격 기준이 된 720점은 100점 만점(총점은 1660점)으로 따지면 43점으로 과목별 과락(科落) 기준인 40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이런 식으로 뽑힌 하위 성적의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험은 선발 정원(작년 약 700명)을 정해놓고 고득점자부터 등수를 매겨 선발하는 정원제 시험인 사법시험과는 선발 방식이 다르다. 과목별 과락(40점)이 있는 것은 같지만 일정기준(합격 기준)을 넘으면 전부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시험에 사실상 ‘정원제’가 적용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2010년 12월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보장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후 법무부는 “로스쿨생 정원 2000명 가운데 1500명가량을 변호사로 뽑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시험 합격자 1451명은 법무부가 ‘약속’한 1500명의 근사치이다. 결국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민원에 밀려 법무부가 자격 미달 수료생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87%가 넘는 이번 시험 합격률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합격률이 30%대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차이는 회계사 시험은 합격기준을 60점으로 잡아 과목별 과락과 별개로 부자격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둔 반면, 변호사 시험은 사실상 합격 기준이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때문에 생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인데 반타작도 못한 사람까지 구제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채점을 후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이번 시험에서 과락자는 193명으로 전체의 11.59%였는데, 채점위원이었던 한 로스쿨 교수는 “내가 보기엔 30~40%는 과락 수준”이라고 했다.

로스쿨 수료생들 가운데는 사시합격자 못지않은 법률 실력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수료생들은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로펌들의 입도선매(立稻先賣)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재판에 투입할 수 있을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편이다.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는 “새로운 표준 교과과정을 만들어 교육방식부터 바꾸고, 유럽처럼 논리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험 유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 평

총 평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토론회를 진행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소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님의 판결을 수업시간에 종종 인용하고 학생들에게 참고하도록 지도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개최하는 한국 법률가 대회에서 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발표해 줄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조정과 중재를 하고 있는 곳은 국내 30개 이상의 기관이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장 잘 되고 있고,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기에 한국 법률가 대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민사수석부의 중요 업무가 가처분 사건입니다.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는 가처분으로 결정 또는 판결하게 되어 있어 당시 많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 명시되어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가 실제로는 반론보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가 있던 재판부에서는 ‘반론보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신문에 게재하도록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정간물법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 대신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이른바 언론법 또는 인격권법 발전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그 이유는 토론 주제가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서적이거나 판결로써 이론적,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더욱이 애정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법률을 훨씬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적절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로스쿨생들은 언론이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도

가 많다는 것은 로스쿨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급적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나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언론보도일 수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규율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생들이 언론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언론 · 인터넷 · 인격권’이란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법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해당 분야는 현재도 형성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학생들이 공부하고 형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좀 더 사고가 유연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준비해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012. 6. 27.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평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오광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3개월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들의 팽팽한 찬, 반 의견 공방으로 토론회가 훌륭히 진행되었다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한 총책임자로서 오늘 토론회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평을 대신 할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토론회에 참석해왔지만, 오늘처럼 참신하고도 열정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서울대 로스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로스쿨생들이 바쁜 학기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여러 번의 스터디 모임을 갖고 열정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토론회가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회 준비에 열정을 보여준 미디어법학회 소속 학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서울대 로스쿨 정상조 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재형 교수님, 권영준 교수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이번 행사가 저희 위원회에는 물론이고 서울대 로스쿨생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정상조 원장님께서도 인사말에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법원의 재판 아닌 제3의 대체적인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법원의 재판 내지는 소송 위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의 일부 로스쿨에서는 협상이나 조정,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위주의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무에 나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조정이나 중재가 보다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의 재판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해서 조정이나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그 실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토론회가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법률가들이 될 로스쿨생들에게 언론조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여겼습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과 같이 오늘 토론에 임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률가로 살아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

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절차탁마하여 빼어난 법률가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세션 모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로스쿨 관련 소식을 접하곤 했는데 로스쿨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로스쿨 제도를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토론회에 임하는 여러 로스쿨생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단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편견,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실력으로써, 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초에 이미 1기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했는데, 2기, 3기 계속해서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력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로스쿨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다소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언론보도 중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도양단 식의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과 중재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분쟁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로스쿨생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다 더욱 정진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성심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사에 대한 강평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7.

오 광 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 주소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 대표전화 : 02) 397-3114
- * 언론피해상담: 02) 397-3000, 3010, 3100, 3110

- * 홈페이지 : www.pac.or.kr
-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 중부본부_중부본부장 ☎ 031)211-902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442-835

☎ 031)211-9027,9022/FAX 031)212-0223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302-220

☎ 042)525-0778~9/FAX 042)525-0768

충북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산남동 657)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361-160

☎ 043)286-8083,8081/FAX 043)286-8084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200-030

☎ 033)255-2878~9/FAX 033)255-2872

■ 영남본부_영남본부장 ☎ 051)759-7083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613-120

☎ 051)759-7083~4/FAX 051)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706-040

☎ 053)763-0020~1/FAX 053)763-0242

경남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641-826

☎ 055)263-1787,1780/FAX 055)263-1769

■ 호남본부_호남본부장 ☎ 062)676-0360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503-310

☎ 062)676-0360~1/FAX 062)676-0362

전북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560-040

☎ 063)288-0010,0981/FAX 063)288-0980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690-825

☎ 064)722-3328,3352/FAX 064)726-32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FAX:상 담 센터 02)397-3089